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5. 6. 20.(금) 10:00

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
(푸른미래도시국 공원녹지과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727호
- 나. 제 출 자 : 고영찬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5. 5. 29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장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점차 늘어가는 각종 물놀이장을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조례의 적용 범위와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물놀이장 관리 및 이용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이용 제한 및 보험 가입(안 제7조 및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5조의2
 - 2)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2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제정안은 금천구에 설치되는 물놀이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.

나. 주요 내용

1)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- “물놀이장” 정의를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9호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규정함

2) 조례의 적용 범위와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(안 제3조 및 제4조)

- 물놀이장의 종류를 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각종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함

3) 물놀이장 관리 및 이용(안 제5조 및 제6조)

4) 이용 제한 및 보험 가입(안 제7조 및 제8조)

- 물놀이장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고, 안전관리를 위한 이용제한을 규정함.

다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장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

[시행 2021. 6. 23.] [법률 제17695호, 2020. 12. 22., 일부개정]

제15조의2(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)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,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[본조신설 2016. 1. 7.]

□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

[시행 2023. 2. 6.] [행정안전부령 제377호, 2023. 2. 6., 일부개정]

제16조의2(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)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, 2019. 5. 15., 2023. 2. 6.>

1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 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
2.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
4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
5.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 10의2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

람

6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물놀이형 어린이놀이기구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
2. 물놀이형 어린이놀이기구 이용 상태 확인
3.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
4.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16. 8. 12.]